

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
- 수입 바이어 지원 -

- 지원대상 : **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바이어**
- 지원품목 : 한국 농식품(농·임·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
- 신청기간 : 수시접수(모집공고 게시일 ~ 10월) *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
* 접수는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
- 신청방법 : **(미동부, 캐나다) 뉴욕지사 / (미서부, 멕시코) LA지사**
* 진행과정 중 별도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
- 지원한도 :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* 합산하여 업체별 20백만원
* 수입등록·검사 뿐 아니라 전문기관 자문, 라벨링 현지화, 지원금액 합산
*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
- 지원내용 * 미국 기준이며, 국가별(캐나다/멕시코) 지원 상이할 수 있음

구분	세부내용	지원비율	지원한도						
일반자문	○ 통관, 법률, 관세, 프랜차이즈 등록 지원 등	80%	연간 업체당 20백만원						
특수자문	○ 미국 수입경보(Import Alert Red List) 해제 컨설팅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컨 설 팅 내 용</td> <td>1단계</td> <td>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</td> </tr> <tr> <td>2단계</td> <td>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</td> </tr> <tr> <td>3단계</td> <td>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 제출</td> </tr> </table> <p>* 해제기간 통상 6~12개월 소요되며, 해제 완료시점부터 2개월 이내 정산요청 필요</p>			컨 설 팅 내 용	1단계	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	2단계	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	3단계
컨 설 팅 내 용	1단계				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				
	2단계	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							
	3단계	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 제출							
라벨링 현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1단계) 제품 통관사전검토(원료검토), 라벨 사전검토 등 ○ (2단계)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견본 제작 및 라벨링 제작에 필요한 영양성분 검사 등 지원 (샘플 발송비는 지원불가) <p>* 1단계 사전검토결과 수입통관 불가인 경우 2단계 지원불가 * 동판제작, 라벨 스티커 인쇄 및 부착비용, 식품검사 샘플발송비 지원제외</p>								
포장패키지 현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 농식품 현지 포장재·용기 디자인 개선 * K-Food 로고 부착 필수 <p>* 디자인 시안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, 동판·금형제작 및 포장지인쇄 지원제외 * K-Food 로고 부착, 현지어로 표기한 것에 한해 지원(디자인 개선후에도 전면 한글 제품 지원불가) * 디자인 개선 이후 해당 제품 '26년 수입실적 확인 시에만 정산가능(수입면장 등 제출 필요) * 2026년 해당 제품 수입증빙 제출 필수</p>								
수입등록 ·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수입등록) 미국 FDA 공장등록(FRR) 및 갱신, 저산성·산성화식품(FCE-SID) 등록 - OEM 공장 등록 등의 사유로 신청업체와 등록공장의 이름이 다를 경우 OEM 계약서 등 해당 공장과의 관계 증빙 제출 필수 ○ (식품검사)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·검역비 * 각국 수입등록·검사 관련 결과 증빙, 2025년 해당 제품 수입증빙 제출 필수 * 바이어가 식품검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의 사전 동의 필요(신청서 날인) * 현지 검역조치 변동사항에 따라 지원내용 추가·변경 가능 								

○ 지원 진행 절차

진행단계	구분	업무 진행 내용
접수	바이어	지원사업 신청
	↓	↓
	해외지사	사업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→ 신청·접수한 내용 관련 전문기관 배정
	↓	↓
전문기관	전문기관	자문내역 상담 → 인보이스 발행 및 소요예산내역 시스템 입력
	↓	↓
바이어	자부담금(20%) 전문기관에 입금 * 건적이 수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미입금 시 지원신청 포기 간주	
↓	↓	↓
자문	전문기관	자문 진행 및 완료, 진행현황 신청업체 안내, 자문결과 해외지사 보고 및 바이어에 안내
↓	↓	↓
정산	해외지사	정산(80%), 자문실적 관리, 사업정산 및 결과 본사 보고

○ 정산기준

구분	정산 제출서류
비관세 장벽/라벨링	① 인보이스 ② 지출증빙 (체크카피본, 은행내역 등) ③ 결과증빙 (자문결과 보고서) ④ 지원성과보고서 * 수입경보해제 컨설팅은 신청업체 별도 안내
포장패키지 개발	① 정산요청서 ② 인보이스 ③ 지출증빙 (체크카피본, 은행내역) ④ 포장패키지 디자인 개선 보고서 (디자인 전/후 사진자료 필수포함) ⑤ 지원성과보고서 ⑥ 수입증빙 ('26년 해당제품 수입면장) ⑦ 포장패키지 디자인 소유권 합의서 ⑧ (한국 디자인업체 이용시에만 제출) 디자인 용역계약서
수입등록 및 검사	① 인보이스 ② 지출증빙 (체크카피본, 은행내역 등) ③ 결과증빙 (자문결과 보고서) ④ 지원성과보고서 ⑤ 수입증빙 (2026년 해당제품 수입면장)

< 유의사항 >

- 바이어 대상 사업은 신청업체 수, 잔여 예산, 수입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외지사에서 선정가능
- 일반·특수자문, 라벨링의 경우, 현지화사업 신청 이후 현지화 전문기관을 통하여 추진한 건만 지원 가능
- 포장패키지 현지화에서 국내 디자인업체 활용 시 디자인진흥원 등록기업만 이용 가능
- 등록기업 조회방법 :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-(화면 상단 메뉴)산업디자인전문회사 조회
- 신청업체와 특수관계(대표자 동일 등)에 있는 디자인업체 활용 불가
- 수입등록·검사는 현지화 전문기관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 바이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
- 1년에 10건 이상 취소한 경우,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 불가('27년부터 제재 적용)
-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일체의 번역비 지원 제외

○ 제출서류 : 지원항목별 신청서 및 부정수급인지확인서

○ 문의처 : [LA] 박지혜 과장 562-809-8810 jessiep@at.or.kr

[NY] 고운지 과장 212-889-2561 bk16@at.or.kr

2026. 1.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미주지역본부장